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011
----------	-------

발의연월일 : 2023. 6. 30.

발의자 : 김미애 · 김정재 · 서병수
金炳旭 · 윤주경 · 이현승
이종성 · 장동혁 · 지성호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클럽, 유흥 · 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하여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소 등 제공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해당 영업소는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 · 보건상 위해가 크고, 성범죄와 같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75조제1

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매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3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제75조제1항제19호”를 각각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75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 8.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6. ~ 8. (현행과 같음)

② -----.

1. -----.

-----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u>제75조제1항제19호</u>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객업을 하려는 경우	2. ----- <u>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u> -----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u>제75조제1항제19호</u> 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	3. ----- <u>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u> -----

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생략)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4. ——————
제75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5. (현행과 같음)

